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 경기 북부 -

대상지역 :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경기 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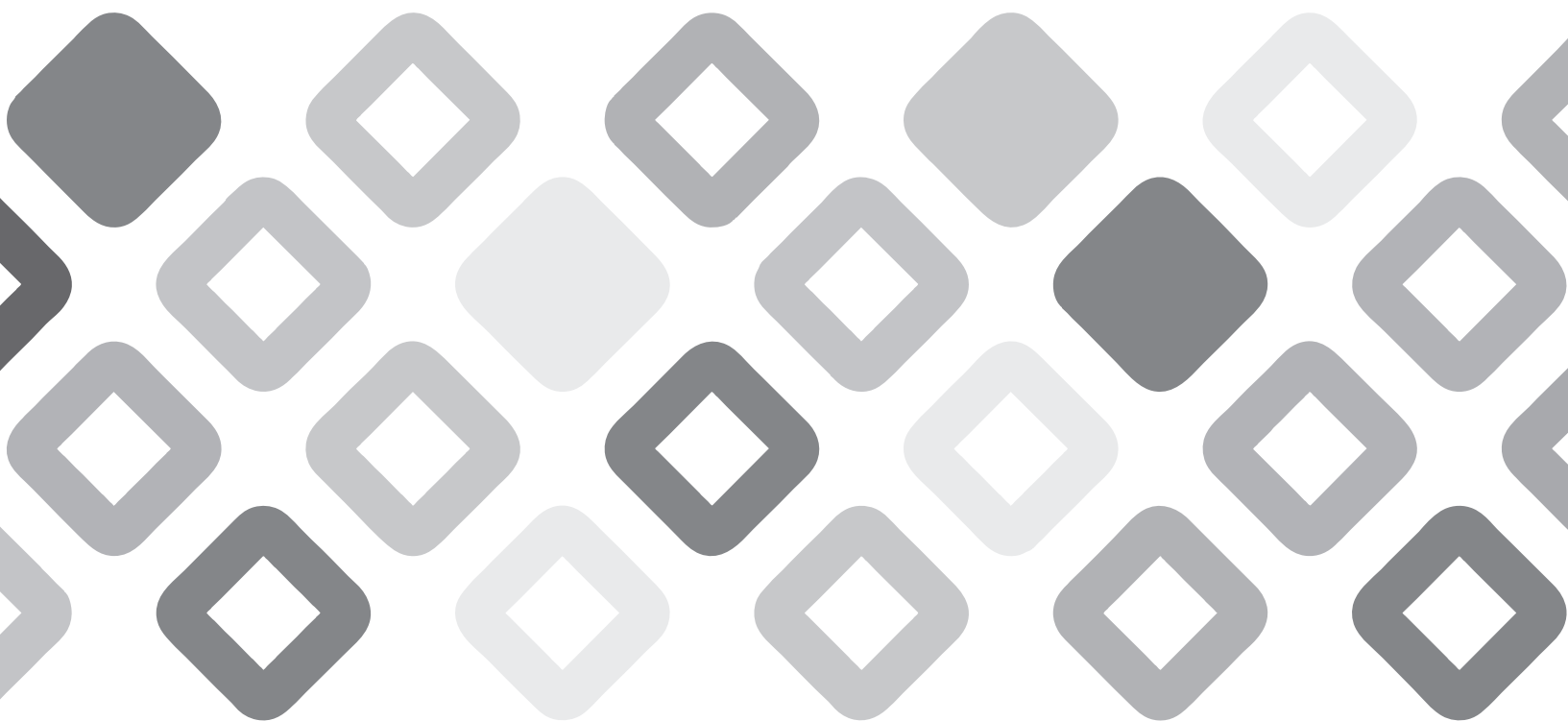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CONTENTS

1. 강원구(전략그룹 나무 책임 컨설턴트)	1
2. 류재수(한국전문기자협회 경기북부협회 자문위원)	15
3. 박승하(진보당 경기도당 부사무처장)	31
4.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37
5. 이준호(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처장)	45
6. 장인봉(신한대학교 교수)	51
7. 조윤민(정의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65



강 원 구

전략그룹 나무 책임 컨설턴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지역 선거구획정안 의견

강원구 | 전략그룹 나무 책임 컨설턴트

1. 서론

가. 「공직선거법」상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

- 인구기준일(제25조제1항제1호) : 2023. 1. 31.
- 지역선거구수(제21조제1항) : 253개
- 인구범위(제25조제1항제2호, 인구비례 2:1)
하한인구수 : 135,521명 / 상한인구수 : 271,042명

나. 경기도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시·도	정수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수		
		인구범위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상한 초과	하한 미달	
경 기 도	59	12	2	-

<인구범위 상한 초과 선거구 현황>

수원시무, 평택시갑, 평택시을, 고양시을, 고양시정, 시흥시갑, 하남시, 용인시을, 용인시병, 파주시갑, 화성시을, 화성시병

<인구범위 하한 미달 선거구 현황>

광명시갑, 동두천시연천군

다. 2008년 선거부터 경기도 국회의원 수와 인구 상관관계 비교

	선거연도	의석수	전년도 1월 말 인구	증감
제18대 총선	2008년	52석	10,926,674명	
제19대 총선	2012년	52석	11,801,232명	+874,558명
제20대 총선	2016년	60석	12,366,711명	+565,479명
제21대 총선	2020년	59석	13,090,648명	+723,937명
제22대 총선	2024년	?	13,596,091명	+505,443명

- 제21대 총선(2020년)의 경우 인구는 723,937명이 늘었음에도 오히려 의석수는 1석이 주는 정무적 결정이 있었다.
- 제22대 총선은 또다시 505,443명이 증가하였고, 상한 초과 지역이 12개가 발생하는 등 순증 요인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2. 의견 제시 원칙

- 가. 경기도의 경우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선거구 증가는 여러 정치적 고려로 억눌려져 있는 상황이며, 이번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고려를 위해 선거구 수가 순증 되는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나. 선거구 변동이 크면 유권자의 혼란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에 의해 결정되기에 변동이 크면 유권자의 혼란과 불편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동의 경우가 최소가 되는 원칙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다. 주어진 제도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도 변경에 관한 제언은 가급적 자제하고자 한다. 필요할 경우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복수의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라.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닌 경우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마. 신도시 지역과 같이 같은 생활권으로 묶여서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의 균질성이 높은 경우 가급적 하나의 선거구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바.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움직임을 고려하여 북부와 남부의 권역을 침범하여 조정하지 않는 원칙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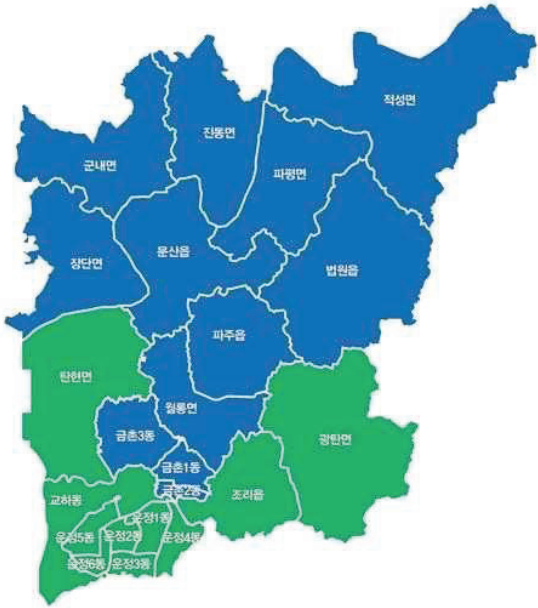
3. 경기 북부지역

- 가. 경기 북부지역 :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10개 시·군
- 나. 불부합 선거구 : 고양시을, 고양시정, 파주시갑, 동두천시연천군
- 다. 파주시갑,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의 불부합 해소 의견을 제시하고, 고양시을과 고양시정의 경우 불부합 해소 의견이 고양시 전체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기에 고양시 선거구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4. 파주시갑 선거구

- 가. 불부합 사유 : 인구수 321,755명으로 50,713명 상한 초과
- 나. 해소 방안 : 해당 지자체인 파주시 안에서 경계 조정으로 해소

다. 현행 선거구



파주시갑 선거구	
합계	321,755
조리읍	29,043
광탄면	10,891
교하동	7,660
탄현면	13,207
운정1동	46,914
운정2동	62,439
운정3동	69,742
운정4동	22,822
운정5동	42,787
운정6동	16,250

파주시을 선거구	
합계	173,725
문산읍	47,693
파주읍	14,114
법원읍	10,182
월롱면	9,361
파평면	3,773
적성면	7,144
장단면	734
금촌1동	22,272
금촌2동	32,008
금촌3동	26,444

라. 조정 의견

- 1안 : 향후 인구 증감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파주시을 선거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파주시갑 선거구의 경우 운정3지구의 준공으로 인해 향후 인구 증가 요인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 따라서, 선거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정3지구에 해당하는 운정5동과 운정6동 지역을 파주을 선거구로 편입하기 위해 파주갑 선거구의 탄현면, 교하동, 운정5동, 운정6동을 파주을 선거구로 조정한다.

파주시갑 선거구	
합계	241,851
조리읍	29,043
광탄면	10,891
운정1동	46,914
운정2동	62,439
운정3동	69,742
운정4동	22,822

파주시을 선거구	
합계	253,629
문산읍	47,693
파주읍	14,114
법원읍	10,182
월롱면	9,361
파평면	3,773
적성면	7,144
장단면	734
금촌1동	22,272
금촌2동	32,008
금촌3동	26,444
교하동	7,660
탄현면	13,207
운정5동	42,787
운정6동	16,250

- 2안 : 「운정신도시」라고 하는 하나의 생활권을 협소하게 보아 파주시갑 선거구에 운정신도시에 해당하는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운정5동, 운정6동을 남겨두고, 조리읍, 광탄면, 교하동, 탄현면, 운정4동을 파주시을 선거구로 조정한다.

파주시갑 선거구	
합계	238,132
운정1동	46,914
운정2동	62,439
운정3동	69,742
운정5동	42,787
운정6동	16,250

파주시을 선거구	
합계	257,348
문산읍	47,693
파주읍	14,114
법원읍	10,182
월롱면	9,361
파평면	3,773
적성면	7,144
장단면	734
금촌1동	22,272
금촌2동	32,008
금촌3동	26,444
조리읍	29,043
광탄면	10,891
교하동	7,660
탄현면	13,207
운정4동	22,822

5.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

가. 불부합 사유 : 인구수 133,205명으로 2,316명 하한 미달

나. 해소 방안 : ‘다만,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인근하는 시·군의 일부를 분할 조정하여 해소

다. 인접 시·군 : 양주시, 포천군, 파주시

라. 역대 선거구

제17대	양주시동두천시	포천시연천군	
제18대	양주시동두천시	포천시연천군	
제19대	양주시동두천시	포천시연천군	
제20대	양주시	동두천시연천군	포천시가평군
제21대	양주시	동두천시연천군	포천시가평군

- 파주시는 인접하나 역사적으로 동두천시, 연천군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구를 형성한 적이 없고, 양주시와 포천시가 인접하여 선거구를 형성한 적이 있다.

마. 조정 의견

- 양주시 선거구 인구수가 245,451명으로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와 합쳐 경계조정으로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갑), (을) 선거구로 조정한다.
- 양주시와 동두천시를 합치고 포천시가평군 선거구에 연천군을 합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양주시동두천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 3개 선거구로 조정되어 2개 선거구로 조정할 수 있는데 3개 선거구로 조정하여 유권자의 불편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의 불부합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316명의 증가만 필요하나 향후 양주시 인구 증가 속도, 동두천시 인구 감소 속도 등을 고려하여 인접하고 있는 은현면(5,622명), 남면(6,767명)과 동두천시, 연천군 일원을 (을)구로 조정하여 해소한다.
-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말하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확정하되’ 로 되어 있어 양주시 은현면, 남면으로 구성된 하나의 지방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양주시 은현면, 남면의 경우 양주시에 속하고 있어 동두천시나 연천군의 행정동과는 함께

지방의원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고, 다른 양주시의 행정동과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달리하기에 같은 선거구가 될 수 없다.

- 다른 선거구에 비하여 인구수가 너무 적은 선거구가 생성될 수 있는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은현면과 남면만을 포함하는 조정안을 1안, 인근 행정동을 추가로 더 포함하는 조정안을 추가 1안, 기제시한 원칙에 따라 양주 신도시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안을 추가 2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안				추가 1안				추가 2안			
(갑)선거구		(을)선거구		(갑)선거구		(을)선거구		(갑)선거구		(을)선거구	
합계	233,062	합계	145,594	합계	197,133	합계	181,523	합계	184,160	합계	194,496
양주시 백석읍	25,817	양주시 은현면	5,622	양주시 백석읍	25,817	양주시 은현면	5,622	양주시 양주1동	4,975	양주시 백석읍	25,817
광적면	11,586			광적면	11,586	남면	6,767	양주2동	51,095	광적면	11,586
장흥면	11,499	남면	6,767	장흥면	11,499	회천1동	9,444	회천1동	9,444	장흥면	11,499
양주1동	4,975			양주1동	4,975					회천2동	26,485
양주2동	51,095	동두천시	91,255	양주2동	51,095	동두천시	91,255	회천3동	26,485	남면	6,767
회천1동	9,444			회천2동	28,257						
회천2동	28,257	연천군	41,950	회천2동	28,257	연천군	41,950	회천4동	63,904	연천군	41,950
회천3동	26,485			회천4동	63,904						
회천4동	63,904										

6. 고양시 선거구

가. 불부합 사유 : 고양시을 인구수 312,152명으로 41,110명 상한 초과, 고양시정 인구수 271,512명으로 470명 상한 초과. 고양시 1,077,599명
 ※ 고양시 전체 인구수 1,077,599명, 갑·을·병·정 선거구

나. 해소 방안 : 해당 지자체인 고양시 안에서 경계 조정으로 해소

다. 현행 선거구 현황

○ 선거구별 행정동 현황

고양시갑	230,050	고양시을	312,152	고양시병	263,885	고양시정	271,512
주교동	11,348	효자동	21,379	식사동	40,602	일산1동	26,079
흥도동	29,741	삼송1동	19,593	풍산동	37,679	탄현1동	30,543
성사1동	21,602	삼송2동	28,674	고봉동	22,605	탄현2동	19,470
성사2동	10,936	창릉동	23,725	정발산동	22,563	주엽1동	27,146
월신동	23,159	화전동	27,950	중산1동	21,185	주엽2동	27,760
고양동	29,083	행주동	18,048	중산2동	24,166	일산3동	34,104
관산동	35,861	행신1동	21,135	일산2동	18,340	대화동	35,182
화정1동	36,537	행신2동	30,773	마두1동	23,316	송포동	20,916
화정2동	31,783	행신3동	23,382	마두2동	15,676	덕이동	31,173
		행신4동	20,313	장항1동	11,078	가좌동	19,139
		대덕동	10,884	장항2동	26,675		
		능곡동	16,496				
		백석1동	29,509				
		백석2동	20,291				

○ 행정구역별 선거구 현황

덕양구	492,402	
주교동	11,348	고양시갑
흥도동	29,741	
성사1동	21,602	
성사2동	10,936	
월신동	23,159	
고양동	29,083	
관산동	35,861	
화정1동	36,537	
화정2동	31,783	고양시을
효자동	21,379	
삼송1동	19,593	
삼송2동	28,674	
창릉동	23,725	
화전동	27,950	
행주동	18,048	
행신1동	21,135	
행신2동	30,773	
행신3동	23,382	
행신4동	20,313	
대덕동	10,884	
능곡동	16,496	



일산동구	295,345	
백석1동	29,509	고양시을
백석2동	20,291	
식사동	40,602	고양시병
풍산동	37,679	
고봉동	22,605	
정발산동	22,563	
중산1동	21,185	
중산2동	24,166	
마두1동	23,316	
마두2동	15,676	
장항1동	11,078	
장항2동	26,675	



일산서구	289,852	
일산2동	18,340	고양시병
일산1동	26,079	고양시정
일산3동	34,104	
탄현1동	30,543	
탄현2동	19,470	
주엽1동	27,146	
주엽2동	27,760	
대화동	35,182	
송포동	20,916	
덕이동	31,173	
가좌동	19,139	



라. 고양 선거구 변경

- 20대(2016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고양시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하였고, 당시 일산서구의 일산2동을 고양시병 선거구로 조정, 일산동구 선거구는 일산2동을 포함하고 식사동을 고양갑으로 조정하였다. 일산지역의 식사동이 덕양구로 조정되었다.
- 21대(2020년) 선거를 앞두고는 고양병 선거구가 고양시갑의 식사동을 다시 편입하고, 백석1동과 백석2동을 고양시을로 조정하였다. 덕양구 지역으로 편입되었던 식사동을 다시 일산동구로 편입하고 이번에는 백석1동과 2동을 덕양구로 조정하는 정치적 결정을 하였다.

마. 조정 의견

- 고양시을의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1안은 21대(2020년)에 조정되었던 일산동구의 백석1동과 백석2동을 다시 고양병 선거구에 조정한다. 이로 인한 고양시병 선거구의 불부합은 20대(2016년)에 조정되었던 바와 같이 식사동을 고양갑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한다.
- 2안은 21대(2020년) 선거구 조정안을 존중하여 불부합인 고양을 선거구에서 삼송1동과 효자동을 고양시갑으로 조정하는 안을 2안으로 제시한다.
- 1안의 경우 고양시병 선거구 2,041명과 고양시정 선거구 470명, 2안의 경우는 고양시을 선거구 138명, 고양시정 선거구 470명이 기준 상한을 초과한다. 추가로 행정동을 조정하면 선거구의 변화가 너무 커지게 되고, 유권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상한 기준을 상승하거나 (이 경우 남부지역 용인시 등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 행정동 안의 다른 기준(법정동이나 투표구)으로 경계 조정을 하는 것이 선거구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안이라고 판단한다.
- 고양시정 선거구 불부합의 경우 탄현2동(19,470명)과 고양시병의 일산2동(18,340명)을 상호 조정하면 불부합을 해소할 수 있으나, 상한 기준을 높이거나(+500명), 고양시병 선거구에 위치하고 있는 일산서구 일산2동과 인접하고 있는 일산1동이나 일산3동의 투표구를 조정하는 것이 변경을 최소화하는 안이라고 제시한다.

○ 1안

고양시갑	270,652	고양시을	262,352	고양시병	273,083	고양시정	271,512
주교동	11,348	효자동	21,379	풍산동	37,679	일산1동	26,079
흥도동	29,741	삼송1동	19,593	고봉동	22,605	탄현1동	30,543
성사1동	21,602	삼송2동	28,674	정발산동	22,563	탄현2동	19,470
성사2동	10,936	창릉동	23,725	중산1동	21,185	주엽1동	27,146
원신동	23,159	화전동	27,950	중산2동	24,166	주엽2동	27,760
고양동	29,083	행주동	18,048	일산2동	18,340	주엽3동	34,104
관산동	35,861	행신1동	21,135	마두1동	23,316	대화동	35,182
화정1동	36,537	행신2동	30,773	마두2동	15,676	송포동	20,916
화정2동	31,783	행신3동	23,382	장항1동	11,078	덕이동	31,173
식사동	40,602	행신4동	20,313	장항2동	26,675	가좌동	19,139
		대덕동	10,884	백석1동	29,509		
		능곡동	16,496	백석2동	20,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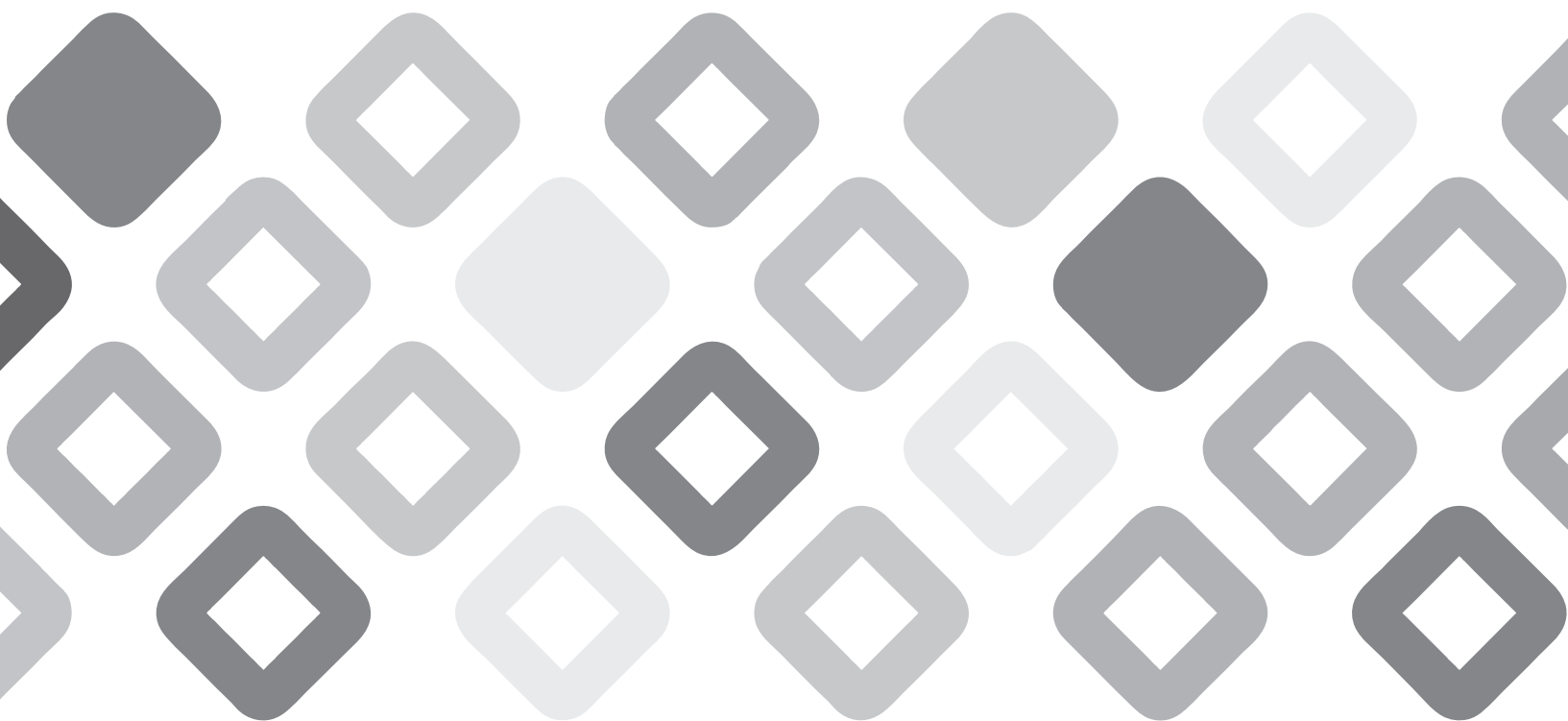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 2안

고양시갑	271,022	고양시을	271,180	고양시병	263,885	고양시정	271,512
주교동	11,348	삼송2동	28,674	식사동	40,602	일산1동	26,079
흥도동	29,741	창릉동	23,725	풍산동	37,679	탄현1동	30,543
성사1동	21,602	화전동	27,950	고봉동	22,605	탄현2동	19,470
성사2동	10,936	행주동	18,048	정발산동	22,563	주엽1동	27,146
원신동	23,159	행신1동	21,135	중산1동	21,185	주엽2동	27,760
고양동	29,083	행신2동	30,773	중산2동	24,166	일산3동	34,104
관산동	35,861	행신3동	23,382	일산2동	18,340	대화동	35,182
화정1동	36,537	행신4동	20,313	마두1동	23,316	송포동	20,916
화정2동	31,783	대덕동	10,884	마두2동	15,676	덕이동	31,173
효자동	21,379	능곡동	16,496	장항1동	11,078	가좌동	19,139
삼송1동	19,593	백석1동	29,509	장항2동	26,675		
		백석2동	20,291				



류재수

한국전문기자협회 경기북부협회 자문위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을 위한 경기 북부지역 의견 진술

류재수 | 한국전문기자협회 경기북부협회 자문위원

I. 목적과 용어의 정의

1. 목 적(目的)

- 가. 주권자(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劃定案) 마련을 위한 기초 제공
 -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가장 정의롭고 직접적이고 충실하게 반영하려면 합리적인 지역 분할과 선거구를 채택해야 한다.
- 나. 주권자인 국민이 신뢰하는 객관성 있는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기초 제공
 - 정당 이익단체 등 정치집단의 의사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역 분할과 선거구를 채택해야 한다.

2. 용어(用語)의 정의(正義)

가. 선거구(選舉區)

선거인단을 나누는 지역으로서 확정되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

나. 획정(劃定)

명확하게 구별하여 정함

다. 선거구획정(劃定)

독립적으로 국민의 대표자(국회의원)를 선출할 수 있는 지역적 단위인 선거구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정하는 것이다.

II. 현행 지역선거구 관련 법조문

1.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공직선거법 [시행 2023. 6. 30.][법률 제19325호, 2023. 3. 29 일부개정]

제24조의 2(국회의원 지역구 확정) ①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

② 국회의장은 제24조 제11항¹⁾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한다)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 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3.>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법」 제86조²⁾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3.3.>

⑥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국회법」 제95조 제1항³⁾ 및 제96조⁴⁾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

[본조신설 2015.6.19.]

[제목개정 2016.3.3.]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2)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전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9. 14>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9. 14>

[전문개정 2018. 4. 17]

3)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4) 제9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정한다.<개정 2016.3.3.>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⁵⁾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⁶⁾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 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3.3.>

③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6.3.3.>

[제목개정 2016.3.3.]

[2004. 3. 12. 법률 제7189호에 의하여 2001. 10.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별표 1을 개정함]

[2016. 3. 3. 법률 제14073호에 의하여 2014. 10.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3항 별표 1을 개정함]

Ⅲ.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2020.4.15.)시 선거구

1. 전국 : 253개 지역구(비례대표 47)⁷⁾

5)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 : 2024. 4. 10(수)

6)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1.> [2016. 5. 29. 법률 제14191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7) 제25조 ③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6.3.3.>

2. 경기도 : 지역구 59개

3. 경기도 북부 : 지역구 15개

■ 공직선거법 [별표 1] <개정 2020. 3. 1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지역구 : 253)

선거구명	선거구역
경기도 북부 (지역구 : 15)	
의정부시갑선거구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의정부시을선거구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자금동
동두천시연천군선거구	동두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고양시갑선거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을선거구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백석2동
고양시병선거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고양시정선거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구리시선거구	구리시 일원
남양주시갑선거구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남양주시을선거구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남양주시병선거구	와부읍, 진건읍, 퇴계원읍,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1동, 다산2동
파주시갑선거구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파주시을선거구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양주시선거구	양주시 일원
포천시가평군선거구	포천시 일원, 가평군 일원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므로 2023년 1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IV. 확정 의견

1. 문제점 및 불합리성

가. 경기도 북부 확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세부내역

구분	시·도	선거구	인구수(편차)	비 고
상한초과	경기도	고양시을	312,152(+41,110)	(인구수) 고양시 1,077,599명(갑을·병·정)
		고양시정	271,512(+470)	
		파주시갑	321,755(+50,713)	(인구수) 파주시 495,480명(갑·을)
하한미달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133,205(-2316)	(인구수) 동두천시91,255+연천군 41,950

나. 확정 고려사항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 제1항 1호와 2호를 고려하여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의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8)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원칙적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으나 고양특례시의 경우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8)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1.> [2016. 5. 29. 법률 제14191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2. 현재 선거구 분석

가. 고양특례시(인구 1,077,975명)

- 평균 인구 : $1,077,975 \div 203,281 = 5.3028812334$
- 상한 인구 : $1,077,975 \div 271,042 = 3.9771511426$

▶ 덕양구(인구 496,604명)

- 평균 인구 $496,604 \div 203,281 = 2.4429435117$
- 상한 인구 $496,604 \div 271,042 = 1.8322031272$

▶ 일산동구(인구 293,128명)

- 평균 인구 $293,128 \div 203,281 = 1.4419842484$
- 상한 인구 $293,128 \div 271,042 = 1.0814855262$

▶ 일산서구(인구 288,243명)

- 평균 인구 $288,243 \div 203,281 = 1.4179534733$
- 상한 인구 $288,243 \div 271,042 = 1.0634624892$

나. 남양주시(인구 736,938)

- 평균 인구 $736,938 \div 203,281 = 3.6252182939$
- 상한 인구 $736,938 \div 271,042 = 2.7189070329$

▶ 남양주시갑선거구(인구 219,983)

- 평균 인구 $219,983 \div 203,281 = 1.0821621303$
- 상한 인구 $219,983 \div 271,042 = 0.8116196014$

▶ 남양주시을선거구(인구 247,287)

- 평균 인구 $247,287 \div 203,281 = 1.2164786675$
- 상한 인구 $247,287 \div 271,042 = 0.9123567565$

▶ 남양주시병선거구(인구 269,668)

- 평균 인구 $269,668 \div 203,281 = 1.3265774962$
- 상한 인구 $269,668 \div 271,042 = 0.994930675$

다. 파주시(인구 508,826)

- 평균 인구 508,826 ÷ 203,281=2.4932285851
- 상한 인구 508,826 ÷ 271,042=1.8772957697

▶ 파주시갑선거구(인구 332,403)

- 평균 인구 332,403 ÷ 203,281=1.6351897128
- 상한 인구 332,403 ÷ 271,042=1.2263892681

▶ 파주시을선거구(인구 176,423)

- 평균 인구 176,423 ÷ 203,281=0.8678774701
- 상한 인구 176,423 ÷ 271,042=0.6509065016

라. 의정부시(인구 463,353)

- 평균 인구 463,353 ÷ 203,281=2.2793719039
- 상한 인구 463,353 ÷ 271,042=1.7072571315

▶ 의정부시갑선거구(201,473)

- 평균 인구 201,473 ÷ 203,281=0.9911059076
- 상한 인구 201,473 ÷ 271,042=0.7423416187

▶ 의정부시을선거구(261,880)

- 평균 인구 261,880 ÷ 203,281=1.2882659963
- 상한 인구 261,880 ÷ 271,042=0.9661971207

마. 양주시(인구 260,708명)

- 평균 인구 260,708 ÷ 203,281=1.282500578
- 상한 인구 260,708 ÷ 271,042=0.9618730676

바. 구리시(인구 190,210(2022.12.31.))

- 평균 인구 $190,210 \div 203,281 = 0.9356998441$
- 상한 인구 $190,210 \div 271,042 = 0.7017731569$

사. 포천시 가평군(인구 211,817명)

- ▶ 포천시(인구 148,939) + 가평군(인구 62,878)(2023.7.31.)
- 평균 인구 $211,817 \div 203,281 = 1.0419911354$
- 상한 인구 $211,817 \div 271,042 = 0.7814914294$

아. 동두천시 연천군(인구 131,127)

- ▶ 동두천시(인구 89,316) + 연천군(인구 41,811) = 131,127
- 평균 인구 $131,127 \div 203,281 = 0.64505209071$
- 상한 인구 $131,127 \div 271,042 = 0.4831467712$
- 하한 미달 $131,127 - 135,521 = - 4,394^9)$

3. 확정 의견

가. 고양특례시(인구 1,077,975명)

(1) 현행 유지

4개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역분할 조정

선거구	현재 선거구	조정선거구	비고
고양시갑선거구 (9동)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변동 없음

9)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때는 인구 133,205(동두천 91,255+ 연천군 41,950)으로 하한에 2,316명 미달이었다.

선거구	현재 선거구	조정선거구	비고
파주시갑선거구	조리읍(29,910), 광탄면(12,699), 탄현면(14,414), 교하동(8,463), 운정1동(47,086), 운정2동(63,693), 운정3동(70,230) 246,495	교하동(8,463), 운정1동(47,086), 운정2동(63,693), 운정3동(70,230), 운정4동(23,409), 운정5동(42,296), 운정6동(19,472) 274,649	운정4동, 운정5동, 운정6동 증설
파주시을선거구	문산읍(48,143), 법원읍(10,770), 파주읍(15,129), 월롱면(9,845), 적성면(7,428), 파평면(4,026), 금촌1동(22,612), 금촌2동(32,026), 금촌3동(26,444) 176,423	문산읍(48,143), 법원읍(10,770), 파주읍(15,129), 월롱면(9,845), 적성면(7,428), 파평면(4,026), 금촌1동(22,612), 금촌2동(32,026), 금촌3동(26,444), 조리읍(29,910), 광탄면(12,699), 탄현면(14,414) 장단면(721), 234,167	장단면 증설,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파주시 갑선거구에서 을선거구로 조정

라. 의정부시(인구 463,353)

현행 유지

마. 양주시(인구 260,708명)

현행 유지

바. 구리시(인구 190,210(2022.12.31.))

현행 유지

사. 포천시 가평군(인구 211,817명) 및 동두천시 연천군(인구 131,127)

선거구	현재 선거구	조정선거구	비고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	동두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동두천시 가평군 선거구 (동두천시 일원, 가평군 일원)	연천군과 가평군 교환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포천시 일원, 가평군 일원	포천시 연천군 선거구 (포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가평군과 연천군 교환

(1) 포천시 연천군(인구 190,750)

포천시(인구 148,939) + 연천군(인구 41,811)=190,750

평균 인구 $190,750 \div 203,281=0.9383562655$

상한 인구 $190,750 \div 271,042=0.7037654681$

포천시청 - 연천군청까지의 거리 31km

(2) 동두천시 가평군(인구 152,194)

동두천시(인구 89,316) + 가평군(인구 62,878)=152,194

평균 인구 $152,194 \div 203,281=0.748687777$

상한 인구 $152,194 \div 271,042=0.5615144526$

이 경우 하한을 상회하여 하한미달을 벗어남.

동두천시청-연천군청까지의 거리 64.8km



Ⅵ. 결 어

1. 고양특례시

지역조정을 전제로 현행유지 하거나 1구 증설

2. 파주시 지역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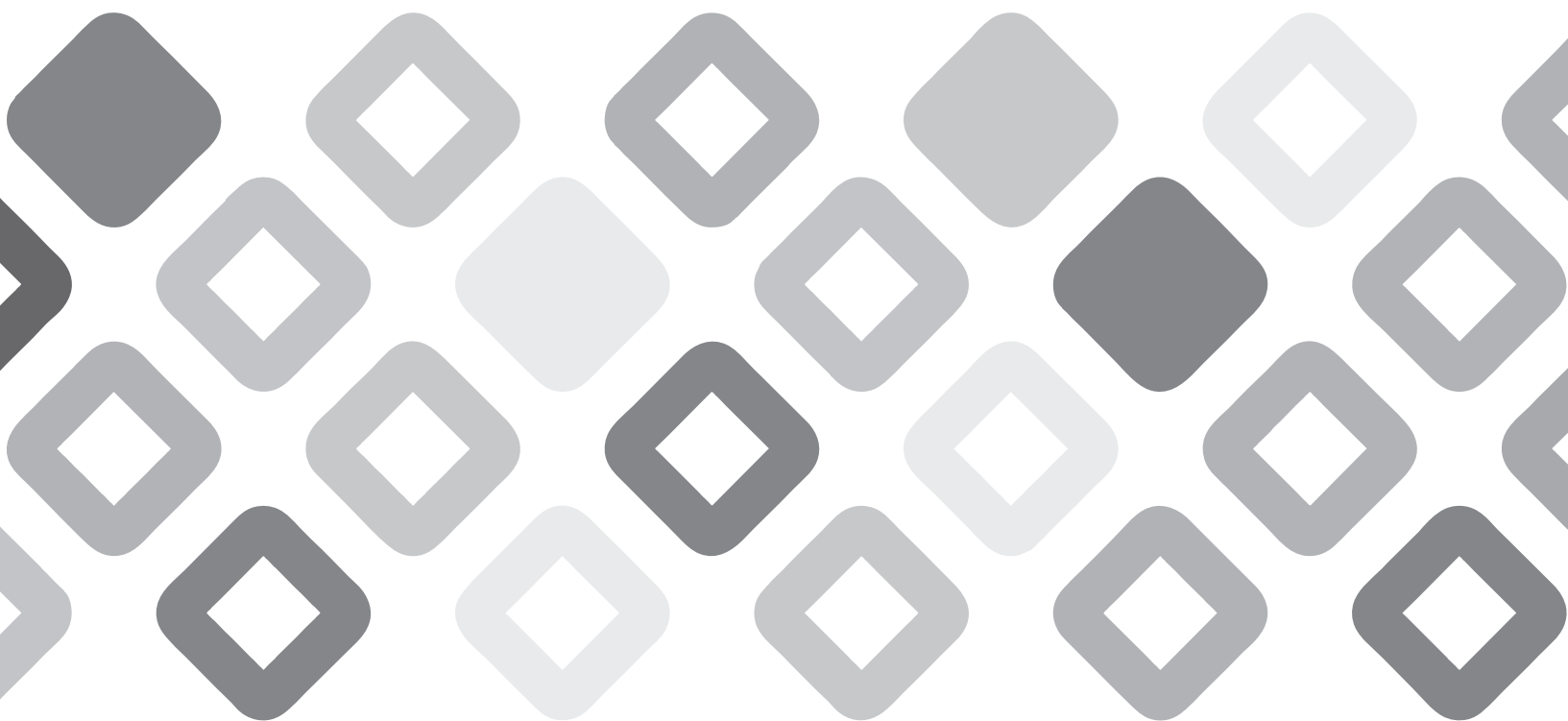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3. 동두천시 연천군과 포천시 가평군

지역 교환 조정



박 승 하

진보당 경기도당 부사무처장



경기 북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진보당 의견

박승하 | 진보당 경기도당 부사무처장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300석 의석 규모의 조건 속에서 만족스러운 획정 결과를 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다수의 사표를 발생시켜 투표 가치의 균등한 반영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2023년 현재 전국 각지에서 표출된 요구들로 비춰볼 때, 진보당에서만 의석·비례제 전면 확대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제도적 약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구비례의 산술적 배치만을 고려한 선거구획정을 논의하는 과정에는 유권자 모두가 지닐 수 있는 큰 문제의식이 동반된다.

가장 근본적 문제는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및 도시 유권자들에게 표의 증가성을 만족시켜주며 동시에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및 농촌 지역 거주민들에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선거구-한계의석이 야기하는 반복적인 제로섬(zero-sum) 현상으로 인해 지역 갈등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런 한계가 있었기에 지난 21대 선거구획정에서는 의석수 부족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읍·면·동을 분할해 선거구를 과도하게 나누는 괴이한 선거구획정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연속된 구획 흐름에서 원인부터 짚어볼 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9대 총선 직전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명시를 ‘자치구·시·군의 일부’로 변경했다. 이때부터 ‘유권자 생활권 쪼개기 획정’이

시작되었다. 물론 제도적 한계가 끌어내는 현상이기에 기초의원 선거 구획에서 극심해지는 이익 주도형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 결과, 경기도에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은 분할되어 팔달구 선거구에 편입된 바 있다. 용인시에서도 경계를 넘나드는 기형적인 선거구획정이 이뤄졌다. 더 큰 문제는 이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는 사실이다. 수원과 용인 같은 인구 밀집 지역들의 의석수는 기준에 맞지 않게 전혀 늘지 않았고, 영·호남 일부는 감소가 마땅했으나 오히려 줄지 않았다. 현행 부족한 의석수와 소선거구제에서의 선거구획정이 지닌 치명적인 결함이다.

제20대 총선 때는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그 반대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도 선거구획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예시다. 당시 강원도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등 5개 시·군은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고, 그 면적이 자그마치 5,970km²다. 서울 10배의 면적에 국회의원 비율이 1명인 것이다. 이 경우는 사실 전면 비례제만이 해결책이다.

제21대 총선에서는 결국 선거구획정의 지역 분할 문제가 종합적으로 분출되었다. 4개 시·군의 ‘공룡 선거구’가 강원 4, 충북 1, 전북 1, 전남 3, 경북 2, 경남 2개였다. 반면 1개 기초자치단체가 3~5개로 분구된 경우는 서울 노원구·강서구·강남구·송파구, 대구 달서구, 경기 수원시·성남시·부천시·안산시·고양시·남양주시·용인시·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등 17곳의 61개 선거구였다. 지난 총선에서 드디어 소선거구제에서의 획정 작업이 한계에 봉착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그간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인구 대표성 반영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기에 조정 의견은 필요하다. 경기도의 적정 가능 의석은 항상 60석을 넘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의석은 모든 총선에서 60석 이하였다. 특히 21대 당시 인구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들 중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한 석 감소했다. 언급했던 생활권을 무시한 선거구 조정은

물론 지방의회에서 혼한 읍·면·동 분할 지역까지 나왔다. 따라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조정을 해야 하는 지역이 가장 많은 경기도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에서 진보당의 제안은 아래 표와 같다. 의견이 없는 지역들도 도내에서의 상대적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지, 다른 지역과 비교시 이미 인구 기준을 훨씬 초과한 곳이 대부분이다. 흥미롭게도 경기도 내에서도 선거구 감소 의견 도시들이 있는데, 해당 지역의 기득권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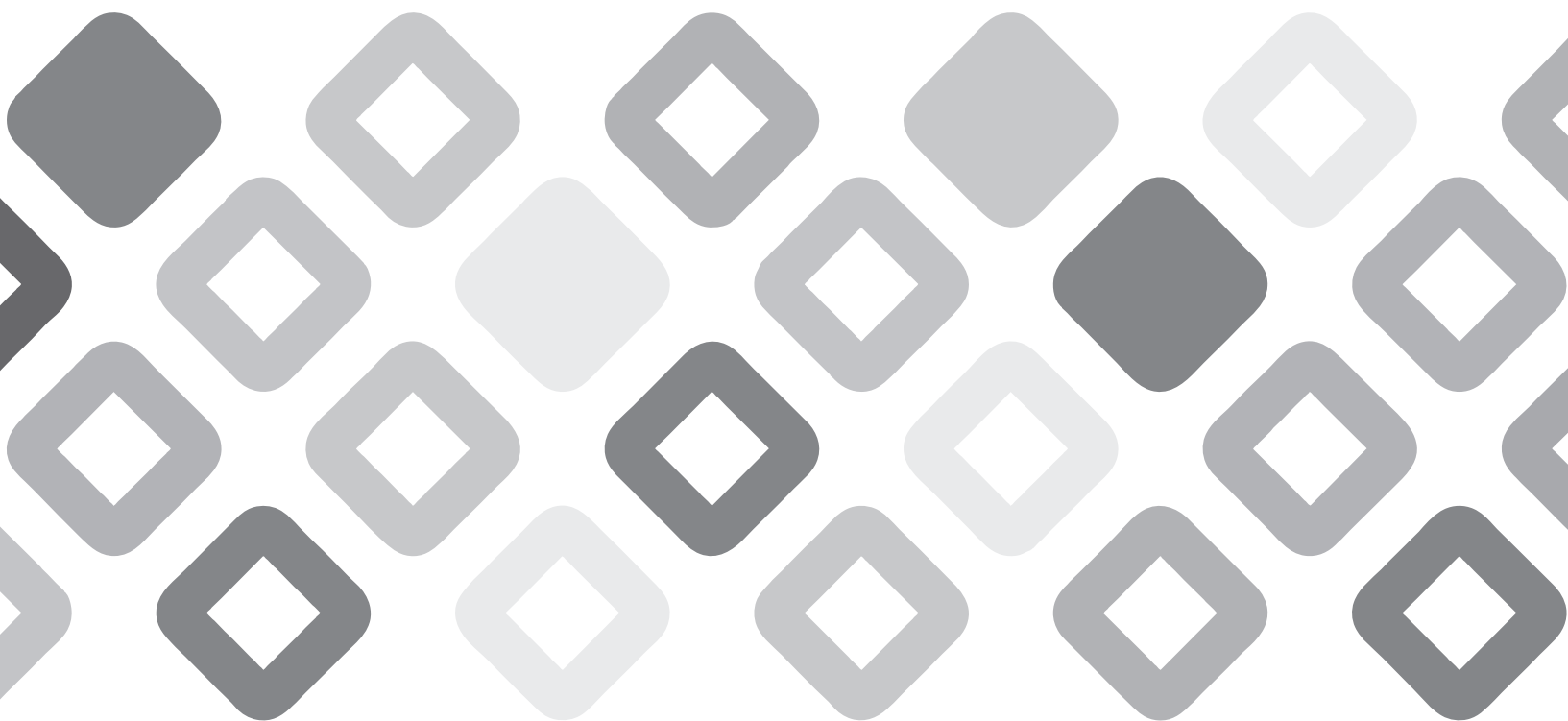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선거구	인구	선거구	의견
고양시	1,077,599명	4	현재 적정 의석 5.30석, 5개 선거구로 개편
과주시	495,480명	2	감/을 15만 격차, 인수 상승 추세로 차기 개편
의정부시	463,353명	2	없음
남양주시	737,171명	3	분도와 관련한 주요 거점 도시, 차기 개편
동두천시·연천군	133,205명	1	없음
양주시	245,451명	1	없음
포천시·가평군	209,901명	1	없음
구리시	198,989명	1	없음

지난 5월 KBS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된 선거제도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숙의 전 조사에서 적정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하여 65%의 참가자들이 더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숙의 후에는 그 비율이 37%로 감소했다.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13%(숙의 전)에 33%(숙의 후)로 변화된 결과가 나왔다. 선거제도 및 선거구획정의 복잡한 구조와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비례제 확대 및 국회의원 정수 확대뿐이다. 특히 살펴본 대로 의원정수 증가는 구획 작업과 불가분인데, 보다 합리적으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의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재차 의원정수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이 정 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을 위한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

이정아 |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 경기북부권 선거구 일반현황¹⁾

선거구	선거구명	선거구역	인구수	선거구 획정 대비 편차	전체인구수
1	고양시 갑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230,728명 (2022.12. 기준)		1,077,742명
2	고양시 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백석2동	312,152명 (참고자료3.기준)	+ 41,110	
3	고양시 병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264,151명 (2022.12.기준)		
4	고양시 정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271,512명 (참고자료3.기준)	+470	
5	양주시	양주시			258,409명
6	동두천시 연천군	동두천시, 연천군	133,205명 (참고자료3.기준)	△2,316	89,669명

1) <참고자료3> '제21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에서 선거구명과 선거구역을 발췌하였으며 <참고자료1>에서 획정 불부합지역을 표기한 인구수를 표에 기록하였으며 전체인구수와 획정부합지역의 인구수에 대해서는 경기도 통계청을 참조(표집 기준일은 2023.06. 표기된 동별인구수는 2022년말 기준)하였음을 밝힘.

선거구	선거구명	선거구역	인구수	선거구 확정 대비 편차	전체인구수
7	구리시	구리시			188,348명
8	남양주시 갑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211,322명 (2022.12.기준)		734,460명
9	남양주시 을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173,711 (2022.말기준)		
10	남양주시 병	와부읍, 진건읍, 퇴계원읍,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1동, 다산2동	343,465 (2022.12.기준)	+72,424	
11	파주시 갑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321,755 (참고자료3.기준)	+50,713	496,946명
12	파주시 을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릉면,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174,132 (2022.말 기준)		
13	포천시 가평군	포천시, 가평군	146,701명 62,150명 (2022.12.기준)		208,851명 (2022.12.기준)
14	의정부시 갑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홍선동, 녹양동	201,713명 (2022.12.기준)		464,724명 (2022.12.기준)
15	의정부시 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자금동	262,011명 (2022.12.기준)		

획정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 선거구의 인구범위는 하한인구수 135,521명, 상한 인구수 271,042명²⁾라고 할 때 경기북부권역인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0개 지역 가운데 인구범위 상한 초과 선거구는 시 전체 인구 약 1백 7만 7,600명인 고양시 을, 고양시 정이며, 여기에 더해 남양주시 병과 파주시 갑이 해당됨. 인구범위 하한 미달 선거구는 시와 군을 합하여 하나의 지역구로 되어 있는

2) 획정 기준 인구범위(제25조제1항제2호, 인구비례 2:1)

동두천시와 연천군으로 2,316명이 부족함. 이는 2020.03.기준 137,850명에서 더 줄어들어 133,205명으로, 하한인구수 대비 편차가 전국 최소인구 선거구에 해당하였음을 확인함.

적절한 인구편차의 설정 장점은 인구편차 허용이 낮게 기준 될수록 과소·과대 대표되는 지역이 나타날 가능성 큼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 있음. 즉 게리맨더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랜 시간 선거구획정 논의와 결정 과정이 있어 온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설정을 위한 인위적 조정은 지역의 특성 등이 반영된 의제 설정에 대해 다른 지역주민이 이 의제 실행 대리권을 갖게 되거나 배제된다는 데 있음. 이는 선거구획정 의견진술에 있어서 헛갈리는 지점이었음.

그러함에도 현행 제도하에서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진술은 유권자분포 현황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고 진술인의 정주지역인 고양시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진술하고자 함.

■ 의견진술

「공직선거법」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제25조제1항제2호)조항에 의하면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음.

이를 근거로 할 때, 고양시는 지역구 모두 인구범위에 미달하지 않음에도 현재 확정된 구역의 세부 내용을 보면 덕양구에 해당하는 고양시 을에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백석2동의 인구 약 5만이 포함되어 있음. 백석1,2동은

곡산역과 대곡역을 경계로 하여 덕양구와 뚜렷이 나뉘어져 있음. 마찬가지로 고양시 병의 경우 일산동구권으로, 이곳에 일산서구 일산2동 주민 약 1만 8천 명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인위적인 인구이동을 통해 지역구 하한선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지키고자 한 것도 아님. 현재의 고양시 인구통계를 보면 어느 지역구이건 2개의 지역구는 불부합 지역구가 된다는 것을 피할 수 없음.

이에 진술인 임의로 상한선을 넘는 불부합에 대한 조정을 하고자 하여, 고양시 을에서 백석1,2동을 고양동구로 원 위치 시켜보면 이 지역구는 인구범위 상한초과 선거구에서 해제됨.

그렇다면 고양시 동구인 고양시 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약 31만 4천 명이 되면서 최종 약 4만 명의 수가 늘어나 상한 초과 선거구가 되게 됨. 반복하여, 이곳에 포함되어 있던 일산2동 인구이동을 고양시 서구인 고양시 정으로 하게 되면 고양시 정 또한 상한선 약 1만 2천 명을 초과하게 됨. 즉 기존 확정기준 초과 선거구인 고양시 을, 고양시 정에서 고양시 병과 고양시 정으로 이동하는데 다름 아님.

현재 4석인 고양시는 향후 창릉신도시, 원당시장을 축으로 한 원도심 재개발, 일산동구 중산동에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파주시와 맞닿아있는 덕이동, 그리고 내유동, 설문동 등등에 늘어나고 있는 다가구주택 등으로 미뤄볼 때 지역구 모두 상한선이 무의미한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것은 가까운 미래가 되어 있음. 이렇게 됐을 때 일부 지역에서의 하한선을 유지하기 위한 시, 군 단위의 화학적 결합의 문제와는 또 다른 현재의 상한선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그 무언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

현재로서 상상되는 것은 고양시 갑을 하한기준으로 할 때 약 95,000명, 상한 기준으로 할 때 약 4만 명을 이동하거나 이동해 오도록 함. 고양시 을은 상한 기준 할 때 약 4만 명, 고양시 병은 하한기준 할 때 129,000명, 그리고 정은

상한기준 약 470명 이동... 이런식의 인위적이고 기계적 평등을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지키고자 순차적 이동하여 누적된 인원수만큼 ‘고양시 무 지역선거구’ 로 한 개의 선거구를 늘릴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³⁾의 조정이 논의될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해 진술인은 현시점에서의 의석수 확대는 현실가능하다는 입장임. 단 전제로써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례의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거나 하는 것 분명히 반대함. 비례대표제가 가진 사표(死票) 방지, 무엇보다 소수에게 의회 진입의 기회가 갈 수 있다는 점과 군소 정당 출연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가 가진 장점이 분명함. 아직 까지 정치적 효능감으로 다가오는데 더디긴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며 오히려 보장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러함⁴⁾.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그 지역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욕구는 나를 중심으로 출발하며 구성되게 됨. 이는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나아가 세대/성별/계층 등으로 훨씬 복잡다단하게 표출되게 됨. 이를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하며 또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제도적 장치로써 나를 대리하는 권리 행사, 또는 그 역할이 주어지는 특정인을 우리는 표로 선출하게 됨.

내가 행사하게 될 유권자의 권리는 바로 위와 같은 전제가 포함되어야 비로소

3)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의원 1명 당 국민 17만 명 수준으로 OECD 국가 36개국 중 고작 33위. 국내적 맥락으로 보면 13대 국회 당시보다 국가예산이 약 36배, 발의법안이 약 26배 증가하는 반면 의원 수는 고작 1명 증원하는 데에 그쳤을 뿐. 또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확연히 증가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속의 전 의원 감축 의견이 65%에서 속의 후 37%로 하락한 반면 현행 유지는 18%에서 29%로, 증원은 13%에서 33%로 모두 증가했다.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주장을 검토하고 토론에 임한 시민 참여단이 현행 유지 또는 증원에 무게를 실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원 증원도 언제건 민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가운데 일부 발췌(2023.06.20.)

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그 중 469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5월 6일과 13일에 걸쳐 2~3차 속의조사를 진행했다. 양일에 걸친 속의조사 결과, 속의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원이 더 늘어야 하고, 국회의원 정수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시민이 확연히 늘었다.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선거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담보된 속의의 결과로 단편적인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성명서 가운데 일부 발췌(2023.05.15.)

‘대리자’의 권리인정 또는 역할 부여의 의미를 형성해 낼 수 있음. 현행 제도하에서의 구역을 나누는 획정의 기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달리 방법을 강구 해야지 인위적인 숫자를 맞추기 위해 일산서구에 사는 내가 일산동구의 국회의원에게 나의 지역구의원으로서 대리하라고 하는 것은 뜬금없는 일 아닌가. 결국 배제의 정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획정에 따라 내가 소수자 위치됨을 평등가치 반영이 되었다고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임.

덧붙여 10분이면 지역주민을 만날 수 있는 거리와 1시간을 가야 한 명의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거리 계산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거리만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제 해결은 분명히 달리 접근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합집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결과적으로 3곳을 합쳐도 하한선을 유지할 수 없는 지역은 그 거리만큼의 다른 의제 접근을 한 명이 모두 대리할 수 있는가? 이처럼 결국 하한선이라는 가이드라인 또한 지역을 비가시화 하거나 결국 특정 의제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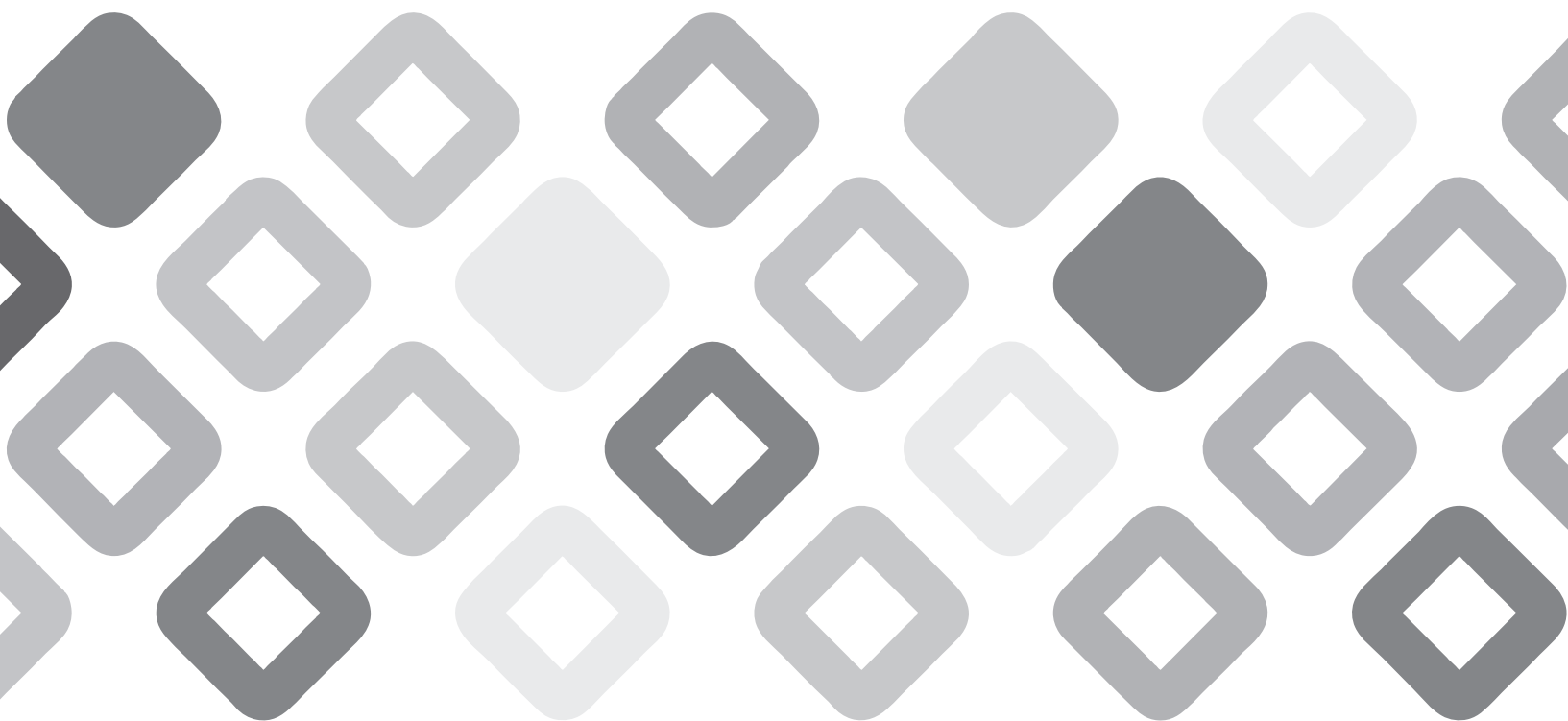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따라서 인구 증가성만 갖고 획정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고양시 을·병·정이 경계 조정된 지역구를 22대에서는 원위치 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고양시 갑·을·병·정의 선거구에서 필연적으로 2곳의 획정기준 불부합 국회의원 지역구가 되어야 하고 의석수 확대 없이 가야 한다면 이를 인정하고 생활권 중심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진술을 마침.



이준호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처장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 관련 의견(경기북부)

이준호 |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처장

1. 現 선거구획정의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투표 가치를 평등하게 반영하고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모두 고려해 획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구인 만큼 인구를 중심으로 획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선거구제에서 1988년 소선거구제로 변경된 이후 영호남 농산어촌이 인구에 비해 과다 대표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1일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3:1까지 허용했던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1로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범위 내의 방법이 등장하며 선거구획정과 선거법을 개정해왔고 지난 국회에서는 정당 간 합의 없이 다수 정당이 소수 정당을 무시하고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정당 간의 협상을 기반으로 하는 선거구획정으로 인해 ▲ 잦은 선거구 변경 ▲ 게리멘더링 ▲ 공룡선거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 권역별 불균형 문제 △ 표의 등가성 훼손 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획정의 목적인 평등선거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깜깜이 상황에 놓이게 되는 문제도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감소와 인구 수도권 집중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현 기준의 의석수를 인구기준으로 나누는 선거구획정 방식은 더욱 풀기 힘든 난제가 되어가고 있다.

2. 개선방향

앞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21대 총선 직전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고, 초과의원 발생을 방지한다는 목적의 하나로 기형적인 준연동형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큰 우려대로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위성정당의 출현 등으로 최악의 선거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과거 석·박사와 전문가가 부족하던 시대와 달리 현재는 지역구를 통해서도 직능·직군·소수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한 만큼 인구 감소·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병립형 비례대표로 환원하면서 지역 대표성과 직능 대표성을 겸비한 인물에 대한 등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구 숫자를 늘리는 방안 또는 비례대표를 지역비례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학적 선거구획정이 필요하다. 빅데이터와 AI의 기술 발전이 무서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R&D, 생산, 유통, 판매에 신기술을 적용시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구획정은 과학의 영역보단 협상의 영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행처리 같은 폭력에 가까운 일들도 발생하곤 한다.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데이터화 하고 이를 수학적 으로 공식화하여 장기적으로 더욱 과학적인 확정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인구를 엄격한 기준으로 획정을 하다 보면 공룡선거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같은 국가처럼 면적을 획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선거구획정 관련법의 강화가 필요하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에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법정기한이 지켜지는 것을 보는 것은 거의 어렵다. 인구범위 조정 역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선거구획정이 타임테이블에 따라 흘러갈 수 있도록 느슨한 법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3. 북부권 이슈

경기 북부지역의 면적은 약 4천268km²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수는 약 360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25%에 불과하다.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되는 등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다. 면적이 경기도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지만 인구수는 경기도 전체의 1/4 밖에 되지 않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살피고 경제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경기 북부지역에서 더 이상의 의원 정수 감축은 없어야 한다.

인구기준일 현재(2023.1.3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동두천·연천 지역구가 유일하다. 경기도 59개 국회의원 선거구로 넓혀봐도 2개 시군 이상의 복합선거구로써 인구수가 확정 기준에 불부합하는 선거구는 동두천·연천 선거구밖에 없다.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발전이 지체된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선거구 감소는 없어야 한다. 게다가 경기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선거법상 동두천·연천 지역구를 통폐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동두천·연천이 인접한 자치구·시·군은 파주, 양주, 포천 등 3개 도시다. 그러나, 동두천·연천은 이 3개 도시와 각각 인구수를 더했을 때 모두 상한인구수(271,042명)를 초과한다.

동두천 91,255명 연천 41,950명	도시명	인구수(B)	(A) + (B)
합계 133,205명 (A)	파주시	495,480명	628,685
	양주시	245,451명	378,656
	포천시	146,374명	279,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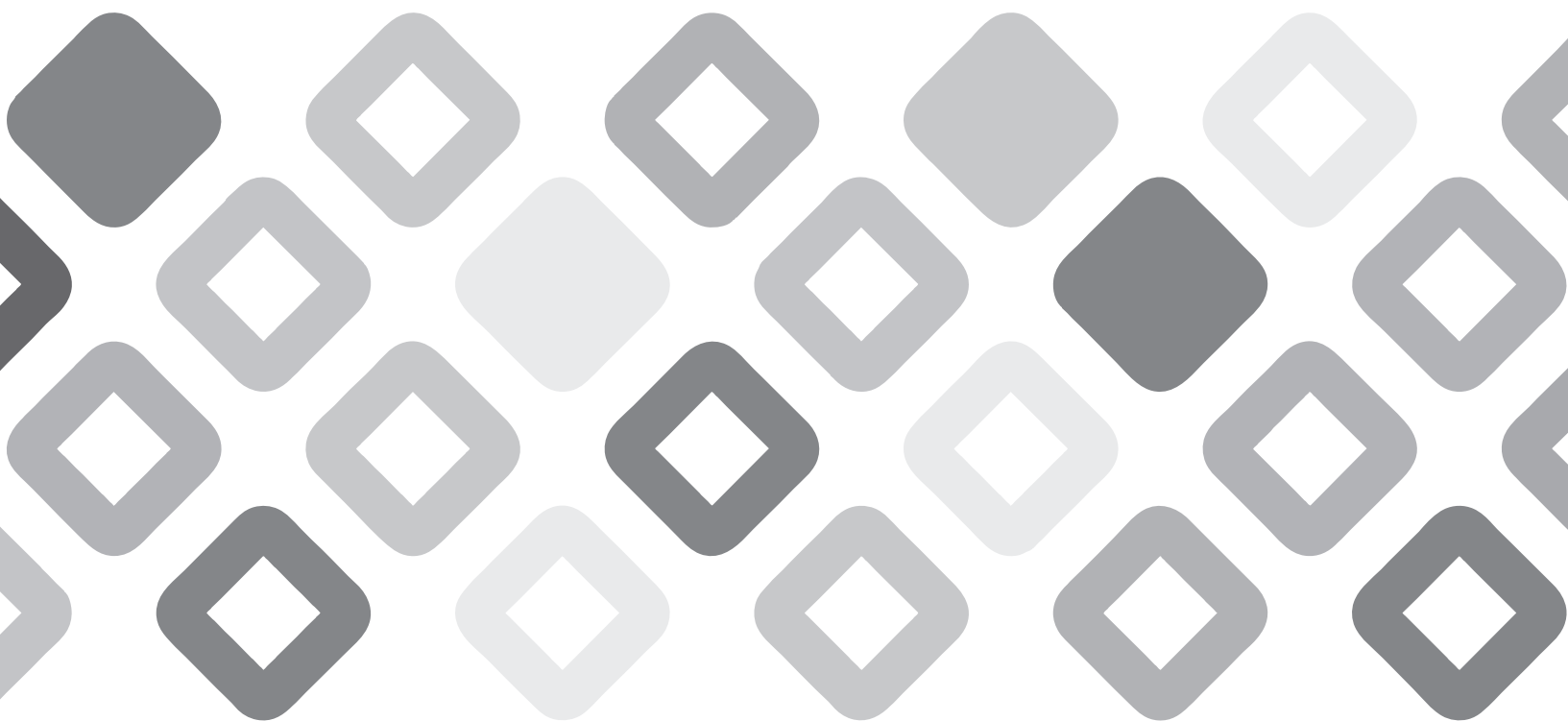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주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이중 은현면과 남면은 동두천·연천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여건상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일부를 하나의 선거구로 확정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제22대 총선 선거구 확정에는 경기도와 수도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 시작이 경기 북부 선거구 확정에 달려있다.



장 인 봉

신한대학교 교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선거구 획정기준에 관한 의견

장인봉 | 신한대학교 교수

1. 문제의 제기

- 공직선거법 제24조는 국회의원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 제출을 명시함. 그러나 지난 1994년, 국회 내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한 뒤, 제15대 총선부터 제21대 총선까지(선거일 39일 남겨두고 획정) 단 한 번도 선거구획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음.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혼란을 겪음. 소수당이나 정치신인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어지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알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음.
- 1인 1표 원칙은 모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모든 투표자의 표가 동일한 가치를 지니도록 보장해야 함.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범위는 하한인구수를 135,521명, 상한인구수를 271,042명으로 규정하고 있고, 평균인구수(전국인구수÷지역선거구수)는 203,281명으로 기준인구편차가 상하 33⅓%임. 그런데 전국 소선거구의 의석수 253석을 선거구 인구수에 따라 나눈다면 <표 1>과 같이 적정의석수(a)가 나옴. 이를 현행 의석수(b)와 비교해 보면 상당한 오차가 발생함

<표 1> 국회의원 선거구의 의석 수 현황분석

(2023년 1월 31일 기준)

시도명	인구수	적정 의석수 (a)	현행 의석수 (b)	과다 대표수 (c=b-a)	시도명	인구수	적정 의석수 (a)	현행 의석수 (b)	과다 대표수 (c=b-a)
계	51,430,018	253	253		경기	13,596,091 (26.43%)	66	59	-7
서울	9,424,873 (18.32%)	46	49	+3	강원	1,535,373 (2.98%)	8	8	-
부산	3,316,107 (6.44%)	16	18	+2	충북	1,594,459 (3.09%)	8	8	-
대구	2,362,880 (4.59%)	12	12	-	충남	2,122,913 (4.12%)	10	11	+1
인천	2,969,502 (5.77%)	15	13	-2	전북	1,768,229 (3.43%)	9	10	+1
광주	1,429,816 (2.77%)	7	8	+1	전남	1,816,707 (3.53%)	9	10	+1
대전	1,445,806 (2.80%)	7	7	-	경북	2,597,527 (5.04%)	13	13	-
울산	1,110,074 (2.15%)	6	6	-	경남	3,277,672 (6.37%)	16	16	-
세종	384,496 (0.74%)	2	2		제주	677,493 (1.31%)	3	3	-

자료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인천지역 의견청취 진술자료집(2023: 5)

- 사실상 일부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과다 대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임. 실제 서울(+3석)과 부산(+2석), 광주, 충남, 전북, 전남(각 +1석) 등 총 9석이 인구수보다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음. 반면에 경기도(-7석)와 인천(-2석)이 인구수보다 적은 의석수로 그 권리를 제한받고 있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물론 관련 규정에 따라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할 수 없도록 하게 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등이 반영된 결과임.
-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과대 해석해 인구수에 비해 과다하게 의석수를 차지하는 것은 다른 지역주민들의 참정권과 대표성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임.
- 경기북부만 놓고 보면, 인구는 2023년 1월 기준 경기북부가 3,618,923명으로 부산의 3,316,107명보다 302,816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수는 경기북부가 15석, 부산이 18석으로 무려 3석이나 부산이 더 국회의원이 많은 모순을 보이고 있음. 경남의 경우에도 인구수가 3,277,672명으로 경기북부가 인구수는 341,251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오히려 경남이 경기북부보다 1석이 많은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적어도 이러한 잘못된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의석수가 배분되어야 할 것임. 해당지역 주민들의 참정권과 투표권 그리고 대표성이 정치권의 기득권 싸움에 밀려 왜곡되지는 않아야 할 것임.

2. 경기북부에 대한 기초이해

1) 경기도의 탄생과 변천

- ‘경기’ 라는 명칭이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으로 ‘5도 양계제’를 실시하면서 개성부를 폐지하고 개성·장단·현령을 설치한 ‘경기제’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음¹⁾. 이후 고

1) 수도인 개경의 경중 5부를 통합하여 경(京)으로 하고, 적과 기를 기(畿)로 통합하여 경기제를 실시하였음 (고려사지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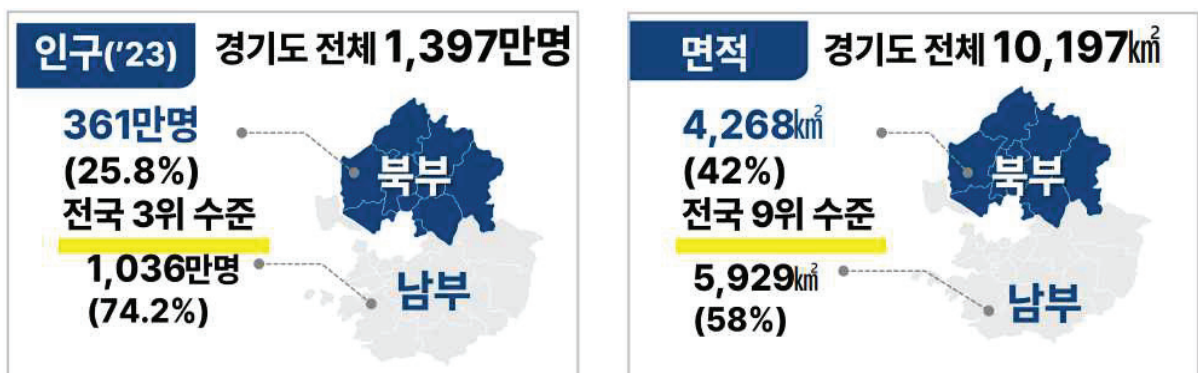
려 공양왕 때는 경기지역을 경기좌도와 경기우도로 나누었다가 1414년 조선 태종 때 하나의 경기도로 통합하여 조선 후기까지 이어져 오다가 1895년 갑오개혁 때 도제 폐지에 따라 경기도를 일시 폐지하고 한성부, 인천부, 개성부 등 3개부 체제로 개편되었다가, 1년 만인 1896년 도제가 부활되면서 경기도는 한성부, 인천부, 개성부 등 3개부와 34개 군체제로 개편되어 해방을 맞았음.

- 1945년 해방과 함께 38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진주하게 되면서 38선 이북에 위치한 경기도 개성과 장단 등이 미수복상태로 남게 되었고, 1946년에는 경기도에 속해있던 경성(한성)부가 서울특별시로 분리·독립하고, 1981년에는 경기도 인천시가 인천직할시로 분리·독립하였는가 하면, 서울과 접해있던 고양군과 양주군, 광주군와 시흥군 등 여러 지역이 서울시로 편입되고, 강화와 옹진, 김포 일부가 인천시로 편입되는 등 여러 번의 관할구역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경기도 역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경기도는 원래부터 남부지역이 북부보다 잘 살았고, 경제력도 훨씬 더 우위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상주인구는 1925년 조선총독부 통계자료 기준으로 경기북부가 경기도 전체인구의 50.8%인 807,000명이고, 경기남부는 49.2%인 782,000명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북부는 남북 분단 이전까지 한반도 경제활동의 중심축으로 경기남부보다 인구도 많은 번창한 지역이었음.
- 그러나, 해방 후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수많은 군부대와 군사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은 고사하고 자유로운 영농마저 제약을 받는데 더하여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 주도의 주요개발사업과 균형발전 지원 대상에서 경기북부를 소외시키는 역차별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날이 갈수록 쇠락하고 주민의 삶의 질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인간다운 삶 보장’이라는 우리나라 헌법적 가치실현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의견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2) 경기북부의 현황

- 1천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경기도는 2023년 4월말 현재 인구가 1,400만 3,527명²⁾으로 우리나라 5,264만명의 26.6%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중 수원과 용인을 비롯한 경기남부에 74.2%인 1,038만 4,604명이, 고양과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시군에는 25.8%인 361만 8,923명이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이러한 경기북부의 인구 361만 8,923명은 현재 광역자치단체 3위 인구규모인 부산광역시의 335만 9,237명보다 259,686명 많고, 4위인 경상남도 334만 6,658명보다 약 27만여명이 많은 수치로 만약, 경기북부가 광역자치단체로 독립할 경우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하는 규모인데다가, 경기북부지역의 면적 역시 아홉 번째 정도여서 인구와 면적으로는 광역 자치가 되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그림 1> 참고), <표 2>와 같이 GRDP 등 경기북부지역의 재정력이나 경제지표는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에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음.

<그림 1> 경기북부지역의 현황



2) 주민등록인구 1,360만 7,919명(행정안전부 자료)과 등록외국인 39만 5,608명(법무부 외국인 등록 통계)을 합한 수

<표 2> 경기도 북부와 남부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1인당 GRDP (2020/만원)	23년 시군 재정자립도	세수 (21결산)	산업단지 면적 (23.1월 기준)	도로보급률 (21년)
경기도 전체	3,989	38.8%	14조 1,249억원	192개소, 249,901천㎡	1.27
북 부	2,492	27.3%	3조 1,108억원 (22%)	53개소, 18,032천㎡(7.2%)	1.09
남 부	4,146	43.3%	11조 141억원 (78%)	138개소, 231,869천㎡(92.8%)	1.37

주 : 전국평균 1인당 GRDP : 3,752만원

출처 : 경기도 내부자료.

3. 경기북부 획정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과 지역의 의견

1) 획정기준 불부합 현황

- 상한초과는 고양시을, 고양시정, 파주시갑 3곳임
- 하한미달은 동두천시연천군 1곳임

<표 3> 경기북부의 획정기준 불부합 현황

구분	선거구	인구수(편차)	비 고
상한 초과	고양시을	312,152(+41,110)	○(인구수) 고양시 1,077,599명 (갑·을·병·정)
	고양시정	271,512(+470)	
	파주시갑	321,755(+50,713)	○(인구수) 파주시 495,480명(갑·을)
하한 미달	동두천시 연천군	133,205(△2,316)	○(인구수) 동두천시 91,255명/ 연천군 41,950명

2) 획정기준 불부합 선거구에 대한 지역의 의견 검토

- 고양시읍은 312,152명으로 상한선을 41,110명이나 넘어섰고, 고양시정은 271,512명으로 상한선을 470명을 넘어서 고양시는 고양시 내에서 갑을 병정무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함.
- 파주시갑은 321,755명으로 상한을 넘어 파주시는 갑을병으로 조정 필요함.
- 동두천시연천군의 경우 선거구획정의 인구기준일이 되는 지난 1월 말 인구 수가 133,205명으로 인구 편차 2 대 1 기준으로 한 하한선 13만 5,500명에 미달함.
 - 경기도 북부지역은 물론 경기도 전 지역에서 선거구획정에 가장 큰 변수는 유일하게 하한선 미달인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임. 21대 총선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상황이라 전국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내려간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만약 22대 총선까지 인구 감소가 지속되어 조정할 수 없다면, 이들 지역과 생활권이 비슷한 동두천시는 양주시와 연천군은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분리해 ‘동두천시·양주시’는 갑/을로 분구³⁾하고,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지역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음.
 - 일부에서는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을’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음. 이는 경원축으로 문화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고, 지역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주시와 지방소멸 위험지역인 연천과 동두천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상생발전시켜 보자는 논리임. 그러나 연천은 오히려 포천, 철원과 생활권이 더욱 가깝고, 3개 시·군을 합해 2분할을 한 사례는 없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됨.
 - ‘포천시·연천군·가평군’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는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되어 있지만, ‘포천시·연천군’과는 엄연히 다른 생활권인

3) 양 도시의 인접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동두천시와 양주시에서 북쪽인 은현면과 남면, 회천동 일부를 묶어서 하나의 선거구를 획정하고 나머지 남부 양주시를 다른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방안과 생활권을 기준으로 양주신도시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그 외 양주시 지역과 동두천시를 합한 선거구를 나머지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방안 등이 있음

가평군을 이번 기회에 분리해 남양주시가평군 갑을병으로 선거구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위에서 논의한 선거구 안들을 2023년 인구규모 면에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음.

<표 4> 경기북부의 인구현황(23년 1월 기준)

지자체	인구수(명)	지자체	인구수(명)
고양시	1,077,599	구리시	188,550
남양주시	737,171	포천시	146,374
파주시	495,480	동두천시	91,255
의정부시	463,353	가평군	62,114
양주시	245,451	연천군	41,950

<표 5> 지역에서 논의되는 선거구 대체안 검토

선거구(안)	인구수(명)
포천시·연천군·가평군	250,438
동두천시·포천시·연천군	279,579
동두천시·양주시' 갑/을	336,706
남양주시·가평군' 갑/을/병	799,285

- 위 <표 5>를 보면 ‘동두천시·포천시·연천군’은 상한선을 넘어서고 있고, ‘남양주시·가평군’ 갑을병도 어떻게 구획되느냐에 따라 상한선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 매우 불가능한 대안으로 보임.
 - ‘포천·연천·가평군’은 인구규모는 적정해 보이지만 면적으로 보면, 포천 826.4km²(서울의 1.37배), 연천 676.31km²(서울의 1.12배), 가평 843.44km²(서울의 1.4배)로 합계 2,346.15km²로 서울시 면적 605.2km²의 3.88배의 초거대면적의 선거구가 탄생하게 되어, 동일선거구 내 지역 거리가 너무 멀어 지역주민 간 소통이 어렵고, 1명의 국회의원이 대표하기에는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선거구라고 할 수 있음.

- ‘동두천시양주시’ 갑을도 현재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자치구·시·군 일부분할 금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게 되는 연천군은 결국 ‘포천·연천·가평군’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위에서 논의한 비합리성이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음.

3. 대안 제시

1) 선거구 획정의 주요 기준

-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반영
- 동일선거구 지역거리 반영
- 주민의견, 전문가 집단 의견 반영 : 지리적 여건, 인구수, 생활권과 경제권 등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 자치구·시·군 일부분할 금지(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

2) 경기북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주요 고려사항

-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에 따르면 현재 253석인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서울 3석, 부산 2석, 광주, 전남, 전북 등은 각각 1석을 줄여야 함. 반면 경기도는 7석, 인천시는 2석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인구 편차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경기도는 4~7석, 그중에 경기 북부는 2~3석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경기북부 361만 명의 의지임.
- 경기도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구 대비 적은 의석수를 배정받았고, 인구가 늘었음에도 의석이 줄어들어 등 헌법에서 평등선거로 보장한 투표가치 증가성의 원칙과 어긋나는 상황을 겪고 있어서 의석 증가는 반드시 필요함.
 - 하지만 여야는 선거구획정 때마다 농산어촌 배려의 명목과 텃밭 지키기를

위해 수도권 의석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내 전체 의석 증가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음. 이로 인하여 최악의 경우 인구 하한에 미달한 '동두천시·연천군'은 인근의 양주시와 포천시·가평군으로 공중 분해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걱정하는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경기 북부 지역주민들이 매우 많음.

- 사실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직 선거법 25조를 개정하여 '자치구·시·군 일부분할'을 부활시켜 강제 분구 지역을 늘리는 것이며,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사실 서울특별시의 의석을 3석 정도 빼서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고 한편으로 1인 1표 원칙이 가장 무너져 있는 경기북부에 붙이면 지방 의석 손해 없이 경기도 전체의석을 늘릴 수 있음.

3) 구체적인 대안 제시

(1) 이미 법정기한을 넘긴 선거구획정, 지금이라도 빨리하라

- 이번에도 선거구획정은 법정기한을 넘겼음.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정당 간, 후보자 간 이해관계 때문에 기형적인 선거구가 탄생하게 됨.
- 이 과정에서 선거구가 그나마 일찍 정해진다면 출마를 준비하는 주자들은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됨. 유권자들도 이름도 못 들어본 다른 지역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김. 어떤 이유에서든지 선거구획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임.

(2) 중대선거구제를 경기북부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입·시행하자

- 경기북부는 생활권과 교통축을 중심으로 경의축(고양, 파주), 경원축(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경춘축(남양주, 구리, 가평)으로 나뉨.

- 경의축인 고양시와 파주시는 이미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또한 각 지자체별 지속적인 발전계획들이 준비되고 추진되고 있는 바, 경기북부 아니 수도권의 가장 저발전된 지역인 경원축과 경춘축을 광역 행정권으로 구분해 거대선거구를 만들어 중대선거구제를 과감하게 실시함으로써 현재 소선거구의 문제점⁴⁾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기반을 정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그림 2〉 경기도 지도



- 즉, 경의축인 고양시, 파주시에서 선거구 1석씩 2석 증가하고, 경원축 (인구 988,383명)인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을 갑을병정무로 해서 5개 선거구, 경춘축을 ‘구리’ 는 단독 선거구로 하고, ‘남양주·가평’ 을 갑을병으로 하면 문화생활권, 경제권과 선거구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여건이 조성되어 경기북부의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소멸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대표적인 것이 현재 동두천연천선거구와 포천가평선거구로 묶여 있는데, 연천과 가평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지방소멸위험지역임. 특히 포천과 가평은 그 행정구역이 매우 광범위한 바, 이곳에 연천을 묶는다면 앞에서 논의했듯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인 선거구가 만들어 질 수 있음.

-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와 경기북동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실험도 고려해봐야 함. 특히 이는 지금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도 기존의 선거구 보다는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 그리고 여건 등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고 인구의 대표성과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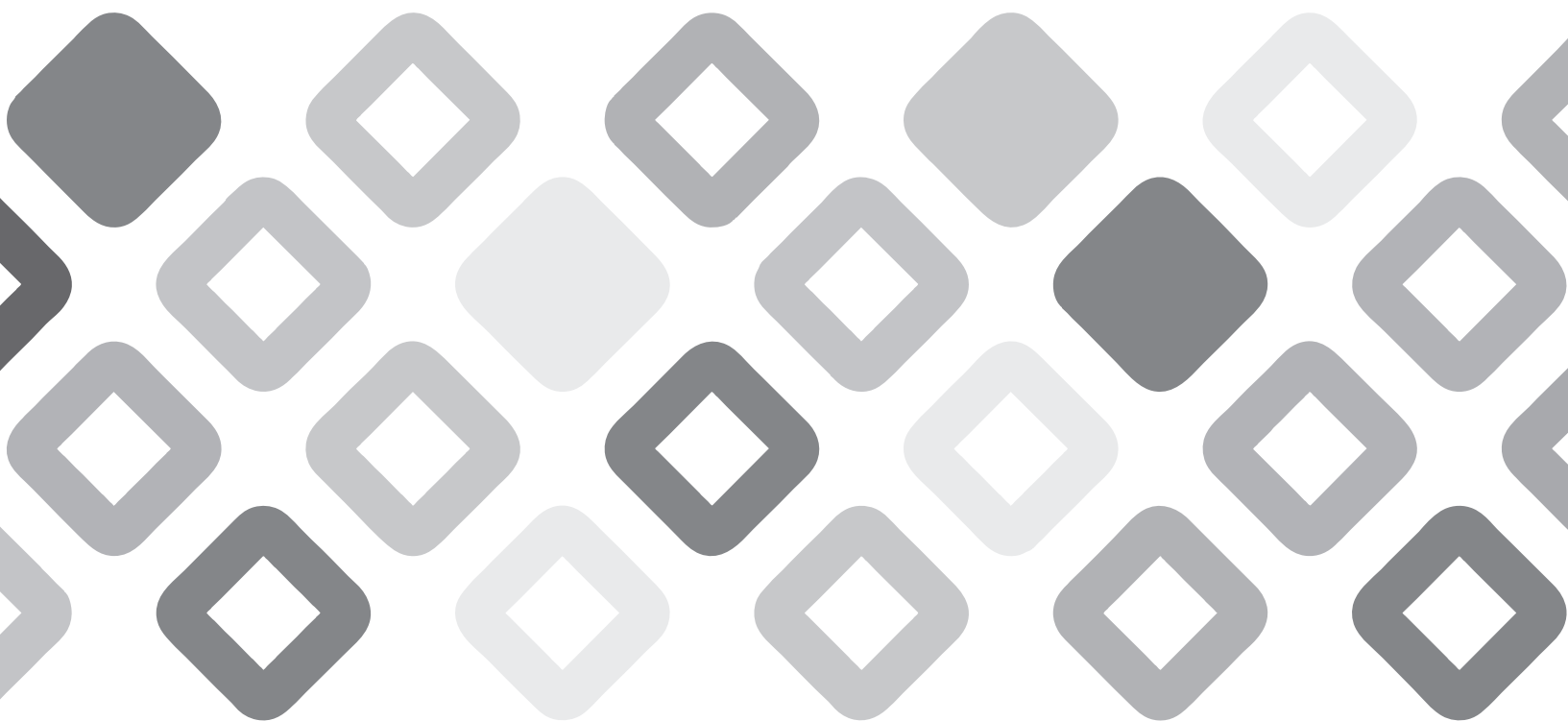
4. 결론 : 지방시대의 시작은 합리적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지방소멸은 국가존립이 달린 문제이자 과제임.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매우 중요함. 국회의원 선거구는 중앙정치를 담는 그릇임. 그릇이 예쁘고 실용적이어야 보는 것도 아름답고 또 먹는 사람도 편하고 행복함.
- 단순한 선거구 개편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함.
- 표의 등가성은 말 그대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임.
 - 2023년 4월 말 현재 경기북부는 우리나라 전체인구 5,264만명의 약 7%인 361만 8,923명이 살고 있는 인구규모 기준 3위권의 광역자치단체임. 그러나 국회의원은 300명 중 5%인 15명에 불과함. 그런 의미에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더욱 중요함. 경기북부는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모든 균형발전의 현장에서 소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과도한 중첩규제의 희생양이 되어 왔음. 이제는 바뀌어야 함.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의 합리적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통한 지역주민 361만 명의 민의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것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지방시대의 의미이고 가치임.



조 윤 민

정의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정의당 경기도당 의견

조윤민 | 정의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1. 들어가며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1등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모든 표는 사표(死票)가 되는 상황임. 즉,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으나 선거에 반영되지 않고 표가 버려지게 됨.
- 이는 고스란히 원내 제1당과 2당이 모든 의석을 독식하여 정치의 다양성은 실종되고, 양당 중심의 대결과 혐오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옴.
- 실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원내 제1당이 50%를 넘긴 정도였지만 실제 의석은 80%를 넘게 가져간 상황임. 즉, 정당 지지율과 비례하지 않는 의석 배분이 나타난 것임.
- 이러한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사표, 정당 득표율과 의석 간의 불비례성 등 불공정한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학계와 시민 사회 등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었으며 충분히 예상된 결과임. 20대 국회가 선거제도를 개혁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21대 총선 결과가 증명하듯 민심을 왜곡하는 불비례성은 오히려 커짐.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제안함.

2. 경기 북부 현황

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경기 북부)

- 2023년 1월 기준으로 평균인구수는 203,281명이고, 이에 따른 하한 인구수는 135,521명, 상한 인구수는 270,042명 임.
- 이 기준으로 볼 때 현재 경기북부는 동두천, 연천은 하한 인구수에 미달한 상황이고, 고양시을, 고양시정, 파주시갑은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상황임.

경기도(지역구 : 59)	
의정부시갑선거구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의정부시을선거구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자금동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	동두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고양시갑선거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을선거구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백석2동
고양시병선거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고양시정선거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구리시선거구	구리시 일원
남양주시갑선거구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남양주시을선거구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남양주시병선거구	와부읍, 진건읍, 퇴계원읍,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1동, 다산2동
파주시갑선거구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파주시을선거구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양주시선거구	양주시 일원
포천시가평군선거구	포천시 일원, 가평군 일원

3-1. 상한인구수 초과 선거구

- 고양시읍, 고양시정, 파주시갑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선거구 조정이 예상
- 선거구 조정 폭 최소화 - 기존 선거구의 변화 폭이 클 경우, 유권자들은 공약추진의 연속성·의정활동 평가 등의 기회를 박탈당함. 지방의원 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방선거 2년이 채 안되어 내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은 다른 선거구 지방의원이 되고, 다른 지역 유권자들이 뽑은 지방의원이 우리 동네 지방의원이 되는 불합리한 일이 되풀이 되었음.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정의 폭을 최소화해야 함.
- 생활권과 선거구 보합 - 선거구 조정 시 동일 생활권역이 동일 선거구역이 되도록 확정해야 함.

《고양시갑의 예》

- ▶ 흥도동과 주교·성사1·성사2동의 경우 지방의원 선거구도 같은 선거구이며, 과거 원당초등학교, 원당지구대 등의 동일 관할이었던 관계로 주민 간 교류가 활발하며 대부분의 단체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구역임.
- ▶ 반면 법정동 기준 오금동과 신원동은 현재 오금초등학교 동일 학구로 학교, 병원도 같이 다니고 상권도 동일하지만 국회의원선거구도 다르고 지방의원 선거구도 다르다 보니 현안 해결에 어려운 경우가 빈번함.
- ▶ 삼송동, 신원동, 오금동, 지축동은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신원동은 고양시갑에 삼송동·오금동·지축동은 고양시읍에 포함됨.
- ▶ 화정동의 경우 과거 지도면 관할 지역으로 능곡동, 행주동, 행신동과 함께 지도농협 관할로 함께 묶여 있음. 현재까지도 매년 8월 15일에 화정·능곡·행주·행신동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지도체육대회를 열고 있고, 각 동 간 서로 마을버스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음.

- **조속한 선거구획정** - 이미 법정 획정기간은 경과하고 말았지만, 선거를 불과 1개월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국회의 선거법 개정이 지연이 주된 원인이겠지만, 국회 선거법 개정이 이뤄진 후에는 정당의 게리멘더링 시도에 흔들림 없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거구를 획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하한인구수 미만 선거구

- 동두천시, 연천군 선거구는 하한선 미달인 지역으로 조정이 불가피함.
- 이 지역과 생활권이 비슷한 양주시와 포천, 가평군 선거구로 분리해 동두천시, 양주시는 갑/을로 분구하고,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현재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
-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갑/을 조정안이 있는데 나름 경원선 라인의 시군이고, 비슷한 생활권이지만 3개 시군을 합해 2분할 한 사례는 없으며 현행 공직 선거법에도 위배됨.

4. 결론

-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는 선거구획정 때 농산어촌 배려의 명목과 텃밭 지키기를 위해 의석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었음.
- 경기도에서 진행중인 택지개발 및 재개발은 동탄2신도시, 양주신도시, 고덕국제도시, 운정신도시 등 아직 2기 신도시에서 진행 중인 곳만 4곳 + @ 이며, 여기에 경기경제자유구역(배곧신도시)나 각 지역별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경기도 의석수 증가는 필수
-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현행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며, 생활권에 기반을 둔 선거구획정이 되어야 함.